법령단위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연관된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 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수 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합는 전하다 (정하다 성기 기의 명이 의로 한 한다 기의 명이 의로 한 한다 기의 명이 의로 한 다 의 의료 등등 무를 하는 이 이 이 의로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 7조의6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일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신설 2023. 3. 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작건이게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익9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
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8. 4.,
2023. 9. 12.>
1.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분야
2.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
함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6. 7. 22., 2020. 8. 4., 2023. 9. 12.>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
을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3. 9. 12.>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 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 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있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 정책협 협의한다. 업의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 한개정 및 제 한기점 및 기업되고 중요 점취 의 세・개성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고 답의안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요 * 신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시·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u>20. 8. 4.]</u>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 (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2023. 3. 14.>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	중개아시 아니알 주 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세2상 개인성보 보호성책의 수립등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대적으로 게임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기점 2020. 2. 4.>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한다)를 둔다.<개정 2020. 2. 4.>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3) ¬ \ \ \ \ \ \ \ \ \ \ \ \ \ \ \ \ \ \		
④ 삭제<2020. 2. 4.> ⑤ 삭제<2020. 2. 4.> ⑥ 삭제<2020. 2. 4.>		
⑦ 삭제<2020. 2. 4.> ⑧ 삭제<2020. 2. 4.>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위원 중 2명은 위원상의 제정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기년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자・검사・변호사의 식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 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 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입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		
었던 사님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전부조직법」제 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4)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 른 사무처의 장은「정부조직법」제 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고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지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세1양 각 오의 어느 아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 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바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 생 청소가 화점된 경우만 해당하고 가	
은 법 제33조제5호는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세2조세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	
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도 모오와 관인된 정책·제도 •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저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성책・세도 •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 •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 제도・실태 등이 조사・연구 교육 및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 정책 · 제도 · 실태 등의 조사 · 연구, 교육 및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 명이 양성에 과하 사하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기술의 표준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3. 3. 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 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성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 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 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	
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	
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나는 법령에 따 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청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	
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정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시조회 요그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사실조회 요구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에 따라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점의・의실한 경우에는 전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워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새식위천 4눈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이 위원은 보	
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줄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1(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 의결에서 제 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적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 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 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물 두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소위원회가 세1항에 따라 심의·의 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3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 • 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 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 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레이도 사건	제8조 삭제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교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향 기년 8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회의은 소리 사해한 소 인다	에 출적한 사람, 선준되면의에 출석한 사람에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 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한다.<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 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명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의 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의 사항을 포함하는 가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되는 기의 제 보 한 제 2항인 자 보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 보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 보 변경에 대한 개인정보 보 변경에 대한 기 등이 기 등이 시 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2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지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 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보계회(이하 "기보계	
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2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 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 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정파 업의하여야 한다.<개경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성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중장기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시관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기본계획이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기관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통보해야 한나.<개성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개정 2020. 8. 4.> 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나.<개성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 행 지위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3 등을 유구함 수 있다. 기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3. 9. 1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 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 항 3. 개인정보 보오 인증마그의 포함 · ^ 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其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 립 세31소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 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필요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 • 상제 • 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한 장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3항"으로 본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11. 19., 2016. 7. 22.>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의 날) 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13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기준・방법・절차 등) ① 법 제 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 는다. 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1. 「공공기관의 수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 밖에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 ·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리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 위관 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평가기준・방법 및 평가지표 등을 포함한평가계획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상 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수준을자료 공기 기관에 되었다. 을 자체적 증명자료 2. 제1호 제1호의 증명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여부등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기위해 필요한 자료
⑥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거나 평가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등소관 분야 평가대상기관의 평가준비또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료 되 중은 표정에 따는 시원을 하기 위에 노력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세 붓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르부다 [본조신설 202<u>4. 3. 12.]</u>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 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 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의 사항을 고 리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보의 측 수집한 정황보의 측 수집한 제공에 대한 예측 성이 있는지의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성이 있는지의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성이 있는지의의 이익을 부당하게 참하 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의 하였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해공이 지속적으로 려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역의 고려사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역의 고려사 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역의 고려사 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 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이 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안정보보 항에 대한 판단 기준의 바침에 공개하고 보기 이용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기업자가 해당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기업자가 해당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의 자기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의 자기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다. <개정 의 차기 의 하다. <개정 2023. 9. 12.> [본조신설 2020. 8. 4.]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 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경우 1. 2. 상경 3.

_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 필요한 경우 4. <u>o</u>

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2.칭 3. 4.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 5. 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6. 0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 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를 한다 한다.<개성 2023. 9. 12.>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목개정 2023. 9. 12.]

제15조의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주체의 수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전하다 식선 3개월 간 월월평균들 기군으로 산 정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 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1. 감 자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 정보주체를 제외한 정보주체로 한다.

1. 통지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

2.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그에 소속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3.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처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다른 공공기관, 법인, 단체의 임직원 처리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

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용・제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기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기기통신사업법 제공한 및 제공학의 및 제공학 기통신사업법 제공한다.

2. 목적 및 제공학 개인정보는 제 제공학 정보는 및 제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외한다.

3.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외한다. 지 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 외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1.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2.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 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법 제20조의2제 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 속하는 방법을 통지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 다) 조신설 2023. 9. 12.1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 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4. 8. 6., 2022. 7. 19.>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 적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 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 하 같이 2020. 2. 4.,

하 같나)알 수 있다.<개성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测는 그 ᆯ ; , , . . . 삭제 <2023. 3. 14.> 3

③ 삭제<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한다.<신설 2023. 9. 12.> 해야 한다. <신설 2023. 9. 12.>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12.>

2023, 9, 12

2023. 9. 12.>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사항에 대한 농의의 의사표시를 확인에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의 대형을 보니고 이 이 이 기가 기를 확인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7. 10. 17.,

지응을 말한다. 한글 2017. 10. 17,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민감정보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3

적

역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 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 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2017. 10. 17., 2023. 9. 12.>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 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 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이 자른 범위를 소가하여 제 3자에 2 4 2022 3 14 5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 2. 4, 2023. 3. 14.>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 2.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 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 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호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통지) ① 개인 정보의 수집 출처 등통지) ① 개인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주체이게 알려하는 때에는 각호의 모든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하는 시리를 참지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러가 있다는 사실 기관에 바라 정보 보이 하는 사실 역 기관에 바라 정보 보이 하는 가운에 바라 정보 보이 중에는 가운에 바라 정보 보이 중에는 게임정보를 수집하는 기안정보이는 제1항에도 보다 하는 기준에 대통령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항 각호의 모든 사이는 매에는 제1항 각호의 모든 사이는 대의 자가 제17조제1항제1 알려야 한다. 다만,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입되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외로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경우이는 지원 전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 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 한 병으로 자기에 제2항 본문은 다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 한 명보자 모함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자리에게 알리는 시기 아니하다. 선설 2016. 3. 29.> ③ 자리에게 알리는 시기 아니하다. 사항은 대통령 2016. 3. 29.> ③ 자리에게 알리는 시기 아니하다. 사항은 대통령 기관에 따라 일에 바라 당하는 경우에는 가장의 기관되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가 있는 경우 기가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하지 개인정보 가 있는 경우 기가 있는 경우 기가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가입에 가당하게 가입는 경우 기가 있는 경우 기가 있다면 기가 있는 경우 기가 있다면 기가 기가 있다면 기가	제20조 삭제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다 강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기하지아니저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기하지아니저 된 기반정보의 파기하지아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 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 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 "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요 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개정 2020 8. 4., 2023. 9. 12.> ②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2.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
ㆍ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 이상의 조시기 로마이 그는 다 한 명이상의 3.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5만명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3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 제38에 따른 조사들 결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3. 12.>
1. 법 제1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인증을 받은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함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함률」제45조의5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함께 따라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단른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안전 확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점검이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개정 2024. 3. 12.> 다 <개정 2024.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청하는 천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 관을 말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른 한국인 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멋선용원(이하 "한국인터뎃선용원"이 ' 한다)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 '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 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할비 회카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작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 작용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 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 자: 2018년 1월 1일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 ·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3, 3, 14.> 2017, 4, 18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4. 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는 경우 는 경우 제<u>2</u>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6. 세24소세1양세1호에 따라 동의들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는 영업에 따다 영확이 표시하여 할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3. 3. 14.>
④ 삭제 <2023. 3. 14.>
⑤ 가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 <2023. 3. 14.> 2017, 4, 18, 2023, 3, 14,>
⑥ 삭제<2023, 3, 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 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경공 2, 14 등

2023. 3. 14.>

제2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 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랓 다음 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우"란 다음 는 경우를 구 년 다음 즉 옷의 이드 아디에 해당아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 9. 12.> 1.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 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 된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5. 29., 시설을 일한다.<개성 2017. 5. 29,, 2020. 8. 4,, 2023. 9. 12.>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 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 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 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설에 고정 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 는 경우 정보주제의 사생활 침해를 집 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들 의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 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식의 병확아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 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차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을 알리고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는 유출·목제29조 대라정보를 사고난・유출·목제29조 기나 허용하는 경우 기반 한도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 또는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신설 2016. 3. 29.> 에 가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한다.<신설 2023. 3. 14.> 14.>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 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 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도구년 그 나를 기 년 2023. 9. 12.>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 [제목개정 2023. 9. 12.]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리 사항을 알리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사제 <2013. 8. 6.>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하는 도난 이 사제 <2013. 8. 6.>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하는 도난 시하다 시계 시간 보험 보이 보이 보험 보이 보이 보험 보이 되고 유식별정보가 분실 · 유나 보험 보이 되고 유식별정보가 하는 바에 따라 기 기 하나는 개인정보의 부호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일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등이 보호와 등이 다른 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시 등을 고려하여 대본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 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2023. 9. 12.> 삭제 <2016. 9. 29.> 삭제 <2016. 9. 29.> 삭제 <2016. 9. 29.> 삭제 <2016. 9. 29.> 1. 2. 3. 3. 삭세 < 2016. 9.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수 있다 < 개정 2016. 9. 29. 2023. 9 십년 선수 있 12.> 있다.<개정 2016. 9. 29., 2023. 9. 12.>
12.>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제25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할수 없으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방법으로 법제25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4, 2023. 9. 12.> 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다목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신는 방법 4 제25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 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	
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 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3. 24, 2015. 7, 24.>	
2015. 7. 24.> 2015. 7. 24.>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야 하다 <개정 2014 3 2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마련・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당당으로 장아는 시설에 내아버는 그디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 기계점 2022. 2.14.>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있다 열성 보처리기기운영자"라 있다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당한다. 작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당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지2조제13호에 따른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목적의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정형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의 및 이를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 3. 14.>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무적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 3. 14.>
⑥ 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 우위조 연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2023. 3. 14.> 하여야 한다.<개청 2015. 7. 24., 3. 14.>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
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어, 보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당한 및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보관기간, 보관기간, 보관기학의 병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기간, 보관기적인 등 상정보의 항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및 물리적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하는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의 장을 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으로 본다.<개정 2023. 9. 12.>
[제목개정 2023. 9. 12.]

기원(정보 차리) 범죄을 정말 때 고청형 영상정보시기 교육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시기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시기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시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게' 청 2023.3.11.4'> (8) 고정형영상정보지리기기의 설치 ' 포문 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생조기관의 교회형 영상정보지리기기 설치 ' 포문 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생경 기관의 교회 영상정보지리기기의 설치 ' 포문 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생경 기관의 교회 영상정보시리기기의 설치 ' 포문 전에 따라한 한다. '세경 2023.3.11.1 제목2조의2(0)통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용영 정보시기기의 용영 정보시기기의 용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등 목적으로 이동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몰려하는 기가를 모려 보다는 사람의 그리는 사람의 보다는 사람의 대학한 한다는 경우로 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가 되었다. ' 제 15조제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2 등 대 제 15조제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2 등 대 제 15조제 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를 보다는 가의 사를 바람이지 점하면 가장하는 경우 모양하는 경우 전보수 지원 보다는 경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명 가는 이 사를 바람이지 결과를 조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 경안 보다를 들었다. ' 무실 기관 이 문을 생각하는 경우로 한 경안 보다를 들었다. ' 무실 기관 이 문을 생각하는 경우 보다는 가에 대통을 들었다. ' 무실 기관 이 무실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8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오염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요 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과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요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재정 2023. 3. 14.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기원장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경하다. 이하 같다)을 활명하여서는 아니틴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 항영하여는 경우 보 한경하는 경우 및 활명하여 보이는 이 경우 정보주제의 권리를 부당하게 참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조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었하다. 3 그 밖에 제 호 및 제 2호에 조하는 경우로 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루 보이는 경우 있는 목에게 함함을 가지 아니라는 경우 의 경우 정보주제의 권리를 부당하게 참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조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무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는 구구도자 불명 지수가 있는 당소으에 대통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활명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 구 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활명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 구 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양상으로서 대통령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보다 되었다. 당한 양상으로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영상성보저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3.
제목개정 2023. 3. 14.]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이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이 보이는 함께 함께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참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영으로 정하는 경우 이 가구들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 의사생활을 현재이 참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구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영화으로서 대통령 영화 관리를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구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영화 관리 기가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구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 영화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③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 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3.
제25조익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로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오항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조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항상한 발하실 탈이실 등 개인 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 통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보급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 급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링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등형 영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목개정 2023 3 1 <u>4</u>]
8항까시의 규정을 순용한다.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호 의학의 표시하여 정보 존체가 촬영 사실을 알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라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조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가 구두자기를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가급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 가급등을 당한 의실 등 기원의 무대를 함께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부터의 업무를 위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원부를 모두체가 연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정보주제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모함하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제하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제하여 양과가 재화 또는 업무의 내용과 기원이다. 변경 정하는 업무의 내용하는 업무의 내용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우위탁자를 접무의 내용이나 우위탁자는 업무의 내용이나 용이나 우위탁자는 업무의 바람이는 연구의 바람이는 연구에도 또한 한국 위탁으로 정하는 바에 처리하는 기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 14.> 24.>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절 2023. 3. 14.>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소속 직원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③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2,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개정 2023. 3. 14.> 14.>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2.>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관한 사항 0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12.]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유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 망리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으로 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인의 양도·합병등이전 당시의 본제 목적의 제공할 수 있다.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되지 기상으로 가입 당시의 본자.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 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 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사 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 한다.	
	제27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사실 표시 등)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 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 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 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드 록 등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 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 · 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3.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이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지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다.	
웨손되시 않도록 내통령령으로 성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 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 처리 기기의 물드로 전하여 가명	
지 시리 기간들 말도도 정말 구 있다. <신설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점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③ 개인성보저리사는 세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등)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 삭제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 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 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 경구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 늘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되는 조치 5.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기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방법 강성 기교 5 -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 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 고시를 아버야 안나.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건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8조의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이 계속되고 있거나 추가적인 국외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국 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 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비하여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아니 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중지 명령의 기준, 제2항에 따른 불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28조의10(상호주의)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11(준용규정) 제28조의8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를 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건 지역에게 알릴수 있다.<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위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서기하는 방법으로 법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인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 제 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제 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방법 모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 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 하 특례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에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 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 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조는 시청 귀오한 청구에는 모오귀원의에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결합신청자 관련 서류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및 반출에 파라 가면정보를 결합하는 목록에 기관은 법 제28조의3제 1항에 따라 가면정보를 결합수 없도록에 가는 서류2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제 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록 하는 데 이번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되었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결합시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학 결합시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학 신설 2020. 8. 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적 보이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 전문기관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 전문이 물요한 기술적 한다. 역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정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정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사위원회 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을 적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가성해야 한다.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있을 걸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일요한 비용을 결합선장자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절 2020. 8. 4.] 다. 2020, 8, 4,

등) 10 보호역원보도는 과정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 보호역원보도는 가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이 보호역원보다는 가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 이 이 10 보호 시간 이 10 보호 시간 이 10 보호 시간 이 10 보호역 임안에는 이 이 10 보호역원 이 10 보	② 결합전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 나한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 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증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세29소의5/가병정보에 내안 안선정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 2. 2., 2023. 9. 12.>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 기계 20 기본법 기계 20 기계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
고 한영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6 삭제	1. 제30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마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 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권한 가로 등 접근 권한 만부여하고 그 라는 등 접근 권한 등 관리 본류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 통제해야 한다.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법 제28조의 4제2항에 따라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9조의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 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나목에서 "전 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제29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 서에 따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 증 전문기관의 평가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국 외이전전문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3. 정책협의회의 협의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유효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인증의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29조의9(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 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처리위탁 • 보관(이하 이 장에서 "이전"이라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이하 "이전대상국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화다

T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본소신설 2023. 9. 12.] 제20조이10(개이정보이 구이 이저 시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강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하다
세28소의8세1양 각 오 외의 무분 단서 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식 오의 보오조시들 에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이정보 치해에 대하 고추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맊에 정보수세의 개인정보 보오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
1명 식 오 외의 구군 단시에 따다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형이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
에 반영해야 한다.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 에 반영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준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
9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나 포위도 이상되었거나 우가질의 포위!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이전이 예상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법 제28조의8제1항, 제4항 또는 제
15야 위마이 주내진
려가 있는 피해가 중대하거나 회복하기
4.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하는 것이 중 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
지를 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히 정보 조체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5.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시들 동애 개인성모의 모오 및 심애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6.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 가 이전되는 이전대상국등이 정보주체
기가 이전되는 이전대성적증이 성모구세 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갖추고 있는지 여부 7.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나 개인정보
가 이저되느 이저대산구들에서 준대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 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
만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이전전 문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9제1항 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
에 띄다 개인경우의 국의 이언를 중시 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할 것을 명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중지명령의 내용, 사유, 이의 제기 절 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
지수 등업 중 그 밖에 들요한 사용을 판 서로 알려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지도 할더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는 포포치현외가 중이어 포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1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mark>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mark> ト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² |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의 사양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시디 당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장한다.<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자 및 파기방

3-12. 게단 3포크 파기르시 중 파기당 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급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한다)

명령으로 성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 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4.> 2020. 2. 4.>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가 병 제28조제1하에 따르 게이저 비

계획의 수입 "시행 및 점검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

.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 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성·운영에 관한 사항 .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8 나. 법 임자의 구성 • 다. 제2

른 조지들 이용이기 다 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법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기

행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소하다

법제처 48

	저장・점검 및 이의 확인・감독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침투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지기에 대한 운영과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고사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1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가수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가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0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다.<개정 2023.3.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신설 23. 3. 1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3. 14.> 14.>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
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 5. 개인성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절 2023 3 14 > 정 2023. 3. 14.>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 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 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 치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및 있다. <신설 2023. 3. 14.>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③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복개정 2023. 3. 14.]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20. 8. 4., 2023. 9. 12., 2024. 3. 12.>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이전의 근거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게 홈 다. 음베이시에 시속석으로 게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있는 시 ·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시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시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적으로 신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모형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에서 이동 <2023. 3. 14.>]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 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참 전형한다.
 기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2. 민감정보 보이의 병정보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4. 법위반행위 발생 여부 5.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 당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기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대용・일정 및 절차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한다.
 절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설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본해야 한다.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하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하고 하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위본해야 한다.
 등 제1항부터 제4항자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하고 가를 관계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 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 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1. > 1.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14.>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록 항의 주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기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보호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일 가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보호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보호처분과 불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자의 보안관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일로 관리할 필요성이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5. 인정보파일 및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대용 정모파일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여부와 그 내용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2023. 3 4, 2023. 3. 14.>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개절 2013. 3. 23.4, 2014. 11. 19. 있다.<개성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신설 2024. 3. 12.> ② 법 제31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세성 2024. 3. 12.>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 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저리 목식이 될정되거나 모유기간이 |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지정한다.<개정 2016. 7. 22., 2024. 峢 렴라 당하는 국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바. 시 1 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나.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 당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위 당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위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말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 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 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장이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장) (장)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3항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4. 3.

12.>
1. 연간 매출액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는 사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 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2. 직전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 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약교 3.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4. 3. 12.> 2024. 3. 12.>
⑥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4. 3. 12.>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물적자원의 제공 [시행일: 2024. 9. 15.] 제32조제4항제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2. 4.>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 제1명에 따는 인능의 유료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2 4 >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자우판리를 설시하여야 한다.<개성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함을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지원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고 1 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운영, 업무수행 현황 등 실태 파악 및 제도 1 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대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 및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 전문성 향상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관련 공유 6.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및 보호위원회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기술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2.] [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24. 3. 12.]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범위)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32조의2에서 이동 < 2024. 3. 12.>]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23 ③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 2023. 3. 1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⑥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7)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보호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14.> ③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방 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 9. 12.>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 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 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 한 또는 거절 사유 ②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 령 영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다정 보파일을 말한다.<신설 2023. 9. 12.> 1. 회의 참석 수당 지급, 자료・물품의 송부, 근정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지역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우 위해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 2.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 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그 밖에 일회적 업무 처리만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파일로서 저장되거나 기록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 [제목개정 2023. 9. 12.]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 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단디뒤권되뉴적으로 성하는 마에 따른다.<개정 2023. 3. 14.>
①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등) ① 개인정보파일(법 제32조제2항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2023. 3. 14.>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2023. 9. 12 2023. 3. 12.>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0. 2017. 7. 20 4. 게진영로시디자의 대흥보자 및 피에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체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2020. 8. 4,, 2023. 9. 12.>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 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 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 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 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정치 등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차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 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 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 2는 삭제 <2023. 3. 14.>]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호의 라하여 개인적차 등) ①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적보보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적보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제 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2020. 8. 4., 2023. 9. 12.> 2020. 8. 4., 2023. 9. 12.> 201 법제32조의2제1항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한다 기상이 포함된 된 보호의 사항이 포함된 된 된 보호의 사항이 포함된 된 보호의 시한다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된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에 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건증 대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기관(이하 "인증 기관"이 가관 기관 기관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신증 대상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의 및 보호 대책 2024. 3. 12.>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기관(이하 "인증 기관(이하 "인증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증이라는 문문서 목록 기안정보관리체계를 수립 · 운영하게 관련되는 원칙 등에 관하여 함의 보호 인증시사는 시청 등이 시원하다. 설로 가관은 제32조의 제1항에 따른 신청 변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한다. 생 법의 일정 등이 관하여 보호 보호 인증에 관하여 전보호 보호 인증 위원회를 설치 · 운영 및 연증시사이 일본호의 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보의 기관은 취원회를 설치 · 운영 및 연증시사의 발대의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하여 한다. (회 법의 항의 설치 · 운영 및 인증시사, 인증시사, 인증 기관은 제2항에 되는 사람을 위원하여 한다. (회 대한 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위원이 받는 기관은 제2항의 설치 · 운영 및 인증시사의 위한 학식과 경험이 물부한 서라의 발대의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회 대한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기정 2015 전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심사에 틀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및인증심사에 틀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법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제34조이5(인증이 사흐과리) ① 번 제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 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지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본조신설 2016. 7. 22.]	
	오의 사유들 말견안 경우에는 세34소의 2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 관) ①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	
	당당으로 정하는 신문기관 이단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 회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1. 안국인터넷신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u>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u> 원	
	회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관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내 보충인의하기 사사하는 어디스해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번인 단체	
	다. 포오 기원되기 들시아는 납구구 8 요건 • 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 32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모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	
	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정보 보오에 산만 신문시식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 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 다.	
	다.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격을 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워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층 심사와 관련하 역 급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	
	다.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경우	
	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 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왕 (게) 등 첫 게4항에 먹는 건문 뾰퓩비 청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 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4.>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익을 모으고 경우 경우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대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 Τ

업무 ^{*}초· 하

한 업무니다.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및 조사에 관한 업무 이 자근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및 조사에 관한 업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및 조사에 관한 업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및 조사에 관한 업무이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제안된 보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 다.

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함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법제처 5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 · 분석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업무	
선 개인정보의 관리 • 문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 • 관리 • 분석할 수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기인정보관디 신문기관은 다음을 하여서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행위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지하하거나 정보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가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정을 취소하여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여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 기관의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정을 취소하여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 경우에는 기정을 기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기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일 경우 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전무 기관의 전문기관에 대한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업무 기관의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의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의 전무 기관의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의 전무 기관의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의 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관의 전무 기관의 전문 기관의 지원 기관의 전문 기관 기관의 전문 기관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	
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수행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3. 3. 14.]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기능	
<u>)</u>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세2앙에 따른 개인정보저리사 및 세 _	
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 을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글 세계역으도 판디 * 심축야여야 안다. ⓒ ㅂㅎ이이하는 게이저ㅂ기 아저하고	
(2) 보오뒤편되는 개인정보가 인신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	
우리 사용을 포함한 게임으로 많은 사 워 플래포을 구축·우영한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 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추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ㆍ철	
회내역 ' '' '' '' '' ''	
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기능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	
요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 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	
모 선종시원 들댓폼의 요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	
푹ㆍ군장약과 있는 신경 시스템들 경오 여게하기나 통하하 스 이다. 이 겨오 과	
12세약기다 중합될 구 있다. 이 경구 된 게 주안해저기과이 자 미 해다 개이저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OF LF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 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 2013. 12. 22., 2017. 7. 20, 2023. 9. 12.>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기.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나.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 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 다 이하 강다) 인 경우 보오 내색의 제시 업무를 발한다. 이하 같다) 다. 「전자정부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 팅 업무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오건설 팅 업무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 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3. ^C 법인 가.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 비를 갖춘 사무실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 한 설비 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 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u>.</u> 른 만 든 외국인등목 사실증병(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전 2012 3 23 2014 11 10 2017 7 2013. 2014. 11. 19., 2017.

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등 영향평가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지정된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제<2023. 9.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 9. 12.>]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지에 내한 농의를 실외할 수 있다.
정 2023. 3. 1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023 3. 1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 법투를 준수하기 되는 경우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다가 지기나 나는 사람의 생고되고 가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안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안정보주체가 지원되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자생할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설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월 2023. 3.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3023. 3. 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모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 3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 36조로 이동 <2023. 9. 12.>]

[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 기원 기업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경	
1년, 자동와된 월경이 제15조제18제1오 1·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 등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는 그러하시 아니하나.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기주과 정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	
1164 20,16321 1946 8 1	
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 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	
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사항 외에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등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거부・설명등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절차 및 개인정보가처리되는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 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 · 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 · 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수 있다.<개정 2020. 2. 4., 2023. 3. 14 > 14.>

14.>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

1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 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 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 야 한다.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투 제33조제9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기준 (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2., 2023. 9.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 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3조제2항, 제24조합제3항, 제 2. 답 제23소세2당, 제24소세3당, 제 24조의2제2항, 제25조제6항(제25조의 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 • 평가한 후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개정 2023. 9. 12.>

명양병가서늘 모오위현외에 제출에야한다.<개정 2023. 9. 12.>
1. 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 분야 및 항목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위험요인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3호의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개선계획
5. 영향평가의 결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

하여 요약한 내용
③ 보호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제6호에 따른 영향평가서 요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3. 9. 12.>

④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수 없다.
② 삭제<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장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발생한 이나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다는 문사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액을 정할 다는 것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7. 24. 2023. 3. 14.>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지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약 기가 전보처리자가 정보주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패인정보 분실 * 도난 * 유출후 학자 정보 분실 * 도난 * 유출후 학자 기위에 되었고 기계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 보실 · 지원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 보실 · 기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① · 보실 · 기인정보 지원 · 보실 · 기인정보 지원 의 의 기간 이 되었음을 알게 되간 이 내에 법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경우에 난 보존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면, 경우에는 하나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의 하나이 위하다 이 된 구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우종 이 된 가이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경우 · 각제 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경우 · 각제 기가 필요한 기수 가로 인하여 72시간 이 내에 통지를 하뜨는 제 34조 기가 의 기가 등에 보존 및 바에 부득 이 한 기본은 항에 또른 통지를 하 또는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하다 그 가는 건 이 내어 본 구하고 개인정보 내용 하다 본 안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정 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가 하고 일을 사장에 관한 구시로 의 사용에 대해서정 2호의 사항에 관한 구시로 위에 대해서정 2호의 사항에 관한 구시로 위에 대해서 한 한다. < 기정보처리자는 경우에는 내용에 대해서 인되는 의 방법으로 내용에 대해서 있고 보지를 함된 의 수 있다를 제 1항 및 제 2항의 통제를 가 하고 를 가 하고 를 가 하고 를 가 하고 된 기수 있는 법제34조제1항 및 제 2항의 통제를 가 있으로 제 1항 및 제 2항의 통제를 가 있는 기상을 위에는 사업자들의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용 기를 가 있는 기상을 위해 34조제1항 각 호로 제 1항 및 제 2항의 후 있다. [전문가정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 2023. 9. 12.] [제 40조에서 이동, 종전 제 39조는 제 40조로 이동 < 2023. 9. 12.]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장 삭제

제39조의석비밀유지명형) ① 법원은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모바자가 가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계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형을 받은 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느를 면행 보온 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느를 가 말할 것을 받은 지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느를 가 말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청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 의 열람이나 증가조사 외의 방법으로 모든 역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자 아나라는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당사자 등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를 당하여 하는 지를 다면 작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하는 지당 이라 하다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자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였거나 제공하였거나 자료에 양압비밀이 포함되어나 우려가 있어 당당에는 것으로 가용되어나는 것으로 가용되어나는 것을 되지당하게 위하할 필요가 있다는 각호의 시작을 보지를 제명하고 있었으면 다른 각호의 사항을 받지를 제명하고 있었으면 다른 각호의 사항을 당하여야 하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으로 다른 각호의 사항을 보임하기에 해당하는 사실 표시와 명령의 본상이 될 경점시키 비밀유지명령의 본상 나일을 되면 무지명령의 본을 대원하기 명을 받을 자에 가장을 일본 때로 내일유지명령을 받을 다시 기상을 될 때로 나일유지명령의 보임 되었다면 등 비밀유지명령의 본의 대원을 받을 자에게 충절된 때 부터 교육이 발생한다나 시설에 바로 가장에 충절된 때 부터 교육이 발생한다나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때를 되었다면 가장을 받을 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대원되면 함된 대원이 물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때 부터 교육이 발생한다나 이 빌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때 부터 교육이 발생한다나 이 빌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따라 나의 발생한다나 이 빌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때 부터 교육이 재공령을 받을 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대원이 재공학의 결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대원이 재공학의 결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되면 대원이 재공학의 결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보는 기계 충절된 때 부터 교육이 재공학의 결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가게 가입을 되었다면 함께 대한 대한 대원유지명령의 사업을 보면 지명을 받을 하여야 하다. 비밀유지명령의 제공학의 결정시키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가게 가입을 되었다면 함께 대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대원으로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 사항을 작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1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경당서를 비밀유지명령의 받을 자 인기 등 기업 등	세39소의4(비밀유시명령) ① 밉원은 이 법은 이반한 해이를 이한 소설비사	
3. 그 뒤에 애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용 너민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을 취장하기에 충분하여에 해당하는 사업의 목정이를 가 없는 공기 명 명 의 나상이 된 명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세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바일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주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나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되었다.	이 답글 위한한 용기도 한한 근에메증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이 시청에 따르 결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	
3. 그 뒤에 애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용 너민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을 취장하기에 충분하여에 해당하는 사업의 목정이를 가 없는 공기 명 명 의 나상이 된 명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세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바일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주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나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되었다.	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	
3. 그 뒤에 애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용 너민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을 취장하기에 충분하여에 해당하는 사업의 목정이를 가 없는 공기 명 명 의 나상이 된 명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세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바일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주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나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되었다.	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병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성슬 받은 사 외의 사에게 중개하시 아 하 거의 며하 스 이다. 다마 그 시처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우에는 그러아시 아니아나. 1다르 다시자/버이이 겨오에도 그 대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T. 디슨 3시시(ᆸ턴턴 3구에는 그 네 표자록 맠하다)	
3. 그 뒤에 애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회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용 너민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을 취장하기에 충분하여에 해당하는 사업의 목정이를 가 없는 공기 명 명 의 나상이 된 명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세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바일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주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나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의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 있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자에게 송달 되었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	
3. 그 뒤에 에당 소용으로 영합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우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비 의 지장을 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 항을 다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단상이 될 영업비밀 음자 기업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등 지경향을 받을 자 및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선면으로 하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음식 기업 등 학원 기업	하는자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취 경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임원유지명령은 제2항의 전성을 당한 당하는 사실 의 대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임원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원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 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취 경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임원유지명령은 제2항의 전성을 당한 당하는 사실 의 대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임원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원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일계 된 사 ② 제1하에 따르 며려/이하 "비밀으지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돼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발명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발명유지명령은 범명 전원 경쟁 보험	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돼당 소송 수행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은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 비밀유지명령은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돼당 소송 수행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은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 비밀유지명령은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등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1, .이미,제출한였거나,제출한역야 할	
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돼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4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발명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발명유지명령은 범명 전원 경쟁 보험	운미적면, 이미 소사아였거나 소사아먹 아 하 즈권 ㄸㄴ 제20ㅈ이2제1하에 따	
2. 세1오의 영업에 일이 해당 소등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 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아 ᆯ 6기 또는 제39포의3제18에 띠 라 제축하였거나 제축하여야 학 자료에	
2. 세1오의 영업에 일이 해당 소등 수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연합기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 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 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은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하다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첫 '"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의 목석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작작의 영합에 작성할 잘 추더가 있어 이를 반지하기 의하여 영언비밀이 사요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진정은 다음 각 호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미밀유시명령을 받을 사 2. 비미오지면령이 대사이 되 여어비미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미글ㅠ시앙잉크 뎅의 글 엉겁미글 읔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	
(4) 법원은 비밀유지병령이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 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	
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법원은 미월유시병령이 결정된 경 이에도 그 겨져서를 바마이되면려요 바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ㅜ~~ ㅡ ㄹㅇ^/ ᆯ 니 르ㅠ^/ ㅎㅎᆯ 닏 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다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무너 요덕이 말생안나.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	
(a) HIBIOTIBEOTATAS TATALAILI	부터 요덕이 말생안나.	
(의 미르파이 이하는 건강을 기득악기다) 간하하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한고록 학	৩ 미글ㅠ시ゔ당의 선경들 기억야기나 각하하 재파에 대해서는 즉시한고를 한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수 있다.	
[천문개정 2023. 3. 14.]	[전문개정 2023. 3. 14.]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소송인지의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따라 열음이 되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끝당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로 제한하는 길람이 청구를 하였으나 기재부분의 열람이 청구를 하였으나 기재부분의 하다 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구사보 (이하 이 조에서 "법원자무관등"이라 전 장구를 하였다는 집원사무관등 이라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다한 지수의 일을 알려야 한다. 일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배밀유지명성되는 시점까지를 밟은 자에 대한 제판이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청구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등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을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3. 3. 14.]	

법제처 7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 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 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 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는 소시들 아시 아니할 수 있다.<개성 2023. 3.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소해배상책임 이행 기주 등에	
2. 「조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에게 개이정보 처리를 위탁하 자	
다 사에게 개인정보 저디를 뒤탁한 사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 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 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하는 보험 또는 공세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② 제1한 및 제2한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비금을 식답한 개인정보서리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 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 7은 삭제 <2023. 3. 14.>]	
7은 삭제 <2023. 3. 14.>]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 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24., 2023. 3.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7. 24.>

19., 2015. /.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사담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체 또는 소비사난세도부터 구인로 드니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 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로 생각 기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보호위원회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우 있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는 개인정보 5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되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등의 기민정보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기민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다한 외부로부터의 일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되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당하고를 하려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하려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기원에 되었다.

[천문개정 2023. 9. 12.] [제39조에선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 39조로 이동 <2023. 9. 12.>]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 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 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 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17. 7. 26., 2017. 10. 17 > 2017. 10. 17.>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 용 4.>
④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br>
다.<개정 2017. 10. 17.>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열람 요구 사항중 일부만을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기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기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기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인의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10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10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기원장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기원장이에게 기피신청을 하는 기괴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사건의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및 개인정보와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쓰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 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분 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 다.<개정 2023. 3. 14.>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 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17. 7. 26., 2020. 8. 4.>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 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개정 2017. 10. 17.>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17.>

1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7., 2020. 8. 4.>

법제처 7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자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4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 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이하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설명 또는 검토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설명 또는 검토 요구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마련하여 제44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다	
	한다. 1. 해당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 및 처리과정 등에 대한 설명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추가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이하 "거부・설명등요구"라 한다)의 방법과 절차를 개인정보처리자가마련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열람 요구"는 "거부・설명등요구"로본다.	

제44조의3(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기 세44소의2세1성에 백다 시호되는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했당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 조치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학 수 있다 다음 학 인할 통해 가 합의 발통해 가 입지 등을 통해 가 입지 등을 함께 이지 등을 통해 기계 등을 함께 이지 등을 함께 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막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막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막다는 경우에는 미리 보이는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범위 2. 자동화된 결정이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기계 인정보의 유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기계 인정보의 유화된 결정에 가 입지 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기계 한 기기 등을 입게 알 수 있다는 지원들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기기 등을 입게 알 수 있다로록 표준화된 기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영양을 함께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을 위하 입기 입해할 수 있도록 등을 위하 입기 입해할 수 있다를 나도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하다 있다. [본조신설 2024. 3. 12.]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우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로 정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3우에는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인의 소소소에 출합이 위원 또는 작무원인의 위원 또는 작무원인 로 정하는 사무기구인되 장나와 바라하거나 열람에 따라 자료를 수 분쟁당사자는 해당사자는 하여 사실확인의 위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일 하여 사건를 소무 원당한 사유가 일 하여 자료를 우 분정당한 사유가 있을 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신설 2023. 3. 14.> 일 함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3. 3. 14.> (의원 또는 의견의 제출을 되었다고 인정하면 된장당사자나 참고인을 들을 수 있다 본쟁도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의 기상한 경우 보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들을 수 있다고 생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개정 2023. 3. 14.> (의원 본쟁당사자나 참고인을 들을 수 있다고 <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목개정 2023. 3. 14.]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 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 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 (援用)하지 못한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 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4, 2023. 9. 12.>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어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수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3. 3. 14.>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기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의의 의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른 하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법원, 항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지급수단도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동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따른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동신망이용하여수로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수 있다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심리자가 개최되다고 기업되었다.	
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	

제48조의5 삭제	
제48조의6 삭제	
제 40 T 이글(4 레이티 나비 이 이 이 네티 O 이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등) ① 법 제3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4. 3. 12.>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자 정의제 2호에 기반되는	
등) ① 웹 세39소의/세1앙에서 "내동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라 한 다)를 마하다 기계정 2024 2 12 5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등이 10억원	
이성 할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 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주	
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인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나반, 해낭 연도에 영업의 선부 또는 일브이 양스 부화·하병 등으로 개이	
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 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 체(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연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분할・합병 등으로 개인 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받은 시 점을 기준으로 정보주체의 수가 1만명 이상일 것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	
② 법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	
② 법 제39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곳 단세 난 다듬 쉭 오의 기판들 말안나 .<신설 2024. 3. 12.>	
.<신설 2024. 3. 12.> 1. 공공기관.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제3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공기	
5오까시에 애당아는 중공기관으로서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	
전는 제외인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③ 법제39조의7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누 갖준 자를 말한다.<개성	
2024. 3. 12.>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	
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줄・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로 개이저ㅂ이 저자 • 과리 어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	
어 급 제39소 곳 제39소의2에 따는 꼰 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	
는 등 필요안 소시들 안 사 ④ 가입대상개인정부처리자가 보현 또	
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으 최소저리크애은 마お다 이됬 이	
S	
다. 다만,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가 보	
삼 포는 중세 / [십파 군미금 식답을 병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 멸표 1의4에서 성한 죄저가입금액의 기주 이상이어야 하다 기저 2023 0	
12., 2024. 3. 12.>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저장・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법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	
제48조의8 삭제	
제48조의9 삭제	
제48조의10 삭제	
제48조의11 삭제	
제48조의12 삭제	
제48조의13 삭제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 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 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7. 22.>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오선(丘應)만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정한다. . ①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항법, 조정업무명이 처리 등에 피오함 사하면 대통력명	제49조의2(분쟁조정 전문위원회)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년 건택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 기본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분위원회는 개인정보에 분위원회는 기원회 시원회 인 기본 등 1 명시 기관 등 1 명시	
E E O E ¬1.	전되의 시구기구기 구성인다. (제공 2020. 8. 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 • 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 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전문개정 2016. 7. 22.]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 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 [] [] [] [] [] [] [] [

법제처 8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 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 경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접단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분쟁조정 원리 기상하기나 집단보장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관리침해 행위의 금지 · 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기상 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위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사 단취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건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건 1년 명리 만간단체 지원법」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1병경리만간단체 로본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1번 경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1번 경관에 가 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건다. 단취에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건다. 중상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원57조연절 분용 인사의 통지 개 개 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건 2.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원57조연절 분용 인사의 통지 개 개 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건 2.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원57조연절 분용 인사의 통지 개 기상인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1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원57조연절 분용 인사의 통지 개 개 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1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1원57조연절 분용 인사의 통지 개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개 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 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 에 알려야 한다.

법제처 8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열람의 다상자에게 한우리 가입 전까지 조사・열람 미리 알리지 않을 지수 가입다. 다만, 조사・열람의 목적 2 의사・열람의 지난 사람의 주의 사용을 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열람의 부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열 금의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3. 조사・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열 금의 병의 기본 등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거부할 수 있다 등의 가부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 때라 조사・열람을 함 때에는 분쟁자가 지명하는 문쟁 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유청 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지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지원회는 기계 출석을 당사자 또는 분쟁 당사자가 되일 전까지 통기가 있다. ④ 반장조정위원회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당재하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 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 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전용하는 경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할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되하고 50명 이상일 것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되하고 50명 이상일 것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되는 생조정이 구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하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되는 생조조정기 당 생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5. 12. 30.>	
으 증명하는 서로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 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 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 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 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 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 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 다.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 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되더라도 집단분 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되더라도 집단분 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되더라도 집단분 정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되더라도 집단분 정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되었다.	
세56소(확성판결의 효력) 원고의 성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세56소(수당과 여비) 문생소성위원회, 조정부 및 분쟁조정전문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9장 보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제6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및 법제6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개정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개청 2023. 3. 14.> 학식으로 구납 보는 게이 파이지는 게 인정보 3. 삭제<2023. 3. 14.>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 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 는 개인청보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지 · 운영하여 제리되는 개인정보에 대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 · 문항하여 지니되는 개인당보에 데 해서는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 27조제1항 · 제2항, 제34조 및 제3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3. 1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 회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 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 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 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합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중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성 막이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모는 이 역사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 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4.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4. 제32조의 9. 12.> (6. 세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 (시행일: 2024. 3. 15.] 제60조제5호

제60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대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할 수 있다.
⑤ 법 제6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3. 9. 12.]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 답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분할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시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본소선설 2023. 9. 12.] 제60조의5(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 6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개인정보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함께 보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함께 보험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함께 보험하여야 하면, 그 조치 결과를 한다. 생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수 있다.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법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패이지 등 에 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한자 1 명령, 과징금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자 1 명령, 과징금의 비용 2.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의 보호위원회 는 법제66조제2항에 다리 가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 발로호위원회는 법제66조제2항에 다리 발표 기본 등 이 경우 그리는 법제66조제2항에 다리 발표 기본 등 이 경우 기본 등 이 경우 기본 등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가 지면의 등 협의 가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과징부과 및 고 하다로 무안 되는 이 경우 명할 다가 그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차 분기을 받은 자에게 다음 이 경우 기본 등 일반은 자에게 다음 이 관리를 되는 경우 명한 기간 피해의 바라 사실 바라 등의을 전하여 발생한 다는 경우에는 기간 피해의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는 위반행위의 바라 기간 되어 바라 등을 모르는 경우 기간 되어 바라 등을 인하여 발생한 다는 공표 명령 및 정도의 기원을 전에 처분하여 보호위원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한다. 무를 기계를 주어야 한다. 및 정당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및 정당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물 전문개정 2023. 9. 12.]

법제처 8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 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업무 보호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사실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필요하면 무로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4. 기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2조(업무의 위탁) ① 삭제 < 2015. 1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 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1. 「전자정부법」제72조제1항에 따른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4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2022. 7. 19., 2023. 9. 12.> 19.> 2023. 9. 12 19, 2023. 9. 12.2 1. 법 제7조의8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 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2. 법 제7조의8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 2. 답 제/조크에 5로에 띄는 게 현공포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3. 법 제7조의8제7호에 딱른 개인정보 |3. 급 제/소의8제/오에 따른 개인성보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4.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5.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6. 7. 업 세35소세2앙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8.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자 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에 대한 기술지원 나. 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 고선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고센 상담 상담
9. 제36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7. 19.>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⑤ 보호위원회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 7. 19.> [제목개정 2022. 7. 19.]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역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수 있다.<개정 2020. 8. 4., 2023. 9. 12.>
1.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 • 의결에 관한 사무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 관한 사무3. 삭제 <2023. 9. 12.>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가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5.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6. 법 제63조의2에 따른 사전 실태점검에 관한 사무7. 법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8. 4., 2023. 9. 12.>
[본조신설 2014. 8. 6.] [제목개정 2020. 8. 4.]

법제처 9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전 기계를 말한다) 그 타양성을 다녔다.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2022. 3. 8., 2023. 9. 12., 2024. 3. 12.>
1.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대상, 지정취소 요건 및 변경신고 사유: 2022년 1월 1일
2. 제1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에 제공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3년 9월 15일
3.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4. 제29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4년 1월 1일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년 3 12.> 2024 3. 12 다. <계형 2024. 3. 12.>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1일
2. 제32조제4항ㆍ제6항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 사항: 2025년 1월 1일
3.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 삭제<2022, 3.8 > ③ 삭제<2022. 3. 8.> [선문개정 2014. 12. 9.]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민원이 접수된 경우3. 그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성하는 경우2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과계인의 사무소나 사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지 기관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지 기반되었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기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고 이를 관계인에게 대용을 위하여 다음 가장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보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있다.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 3. 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2만 사양은 보호위원회가 성하여 고시 ! 수 있다.<개정 2023. 3. 14.>)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 |게 된다.<신설 2020. 2. 4., 2023. 3. 0 어 (7)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 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 다.<신설 2020. 2. 4., 2023.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의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략하는지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교 보호 위원회는 전 에 등 기반 경보시다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약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기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 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자기 해당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상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보조시선 2022 3 1/1]	
에 변을 위반한 자(충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한다.<개정 2023. 3. 14.>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외는 다음 각 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ᄊᄓ. 」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 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지 15소세 18, 세 17소세 18, 세 18소 제 18 · 제 26(제 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2. 제 22조의 2제 1항(제 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 바하여 저너즈체이 도이르 바지 아니하	
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 · 제24조의2제1항(제	
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조미드로버호를 처리하 경우	
두년등록년오늘 시니한 6두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 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 리 조요되는 경으를 표항하다요 이바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 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 ·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 · 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지원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이전한 경우	
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 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 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 려우 따르지 아니하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ㆍ 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 니하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0조/제	
당을 따르시 아니안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 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 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다.	
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세술을 거부하거나 거싯의 사료를 세술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 체 매축액을 기주으로 사정하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	
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	
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 력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	
규모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	
4. 암호화 능 안선성 확보 조치 이행 노	
5. 개인정모가 문질・노난・유울・위	
소·면소·웨논된 경우 취만앵퀴와의	
5.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관련성 및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	
전도 · 눼근의 ㅠ도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	
6.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7.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	
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8.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 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0 위반핸위로 이하 정보주체이 피해	
9.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기구모	
10개인정보 보호 인증, 작율적인 보.	
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1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	
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대한 기보 년년 8로 기체의 기체 기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 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가 경미하거	
나 산정된 과징금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대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	
시 아니아먼 납무기안의 나음 날무터	
내시 아니안 파싱금의 언 100군의 6에	
애궁약근 기선금글 경구안다. 이 경구 가사그의 지스하느 기가의 60개워의 大	
가하지 모하다	
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도속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섹7항에 따른 간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세상수의 에에 따라 상수한다.	
(9) 모오귀천외는 법천의 반설 등의 삯	
ㅠ도 제18에 딱다 구파된 파잉급을 완 그하느 겨오에느 과지그의 내 나비디	
ㅂ시ㄷ ㅇㅜ에ㄷ 쒸ㅇㅁ들 댄 ㄹㅜ더 화근하느 날까지이 기가에 대하여 그으	
회사 등의 예금이자육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	
여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	
으로 청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다. 이 경우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과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의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의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의 보호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등의의 보호위원회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⑩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반결엔 딸라 과상금 부과처분이	
쉬오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_	
피경급할 구파야는 경우에는 경소 납부 하 과자그에서 씨르 비교하기로 겨져하	
라짓근은 공제하나머지 그애에 대해서	
다. ⑪ 보호위원회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 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3. 3. 14.]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경우권고를 받은 사람은이를 존중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보호되고.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우 기관 이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우 기관 기관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고를 발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하다.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초의2에 따른 사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장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②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등을 받으자에게 해당 지원는 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사실 등의 공표 및 공표명령의 방법, 기준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3. 14.>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 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 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 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0, 2, 4,>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 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20. 2. 4.>	

제10자 버치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1조(필식) 다음 각 오의 어느 아다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	
2.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 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 기안의 동안의 개인적보로	
4. 제23초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5. 제2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전 등 기본 기업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군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6. 제28조의3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존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7. 제28조의3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를 모함한다)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등인을 받지 어디하고 결합을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도 열합된 정보를 반출하거나 이를 제3자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 8.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전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전용되는 경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및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려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기존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이용한 자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 ·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아고 개인정모들 계속 이용아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외출으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한 자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외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일이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이 따라 중요제출한 자 1분이 자료를 제출한 자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외출으로 자료제출한 자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중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글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중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걸는 기부 당하게 되는 기괴한 자연 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74조(양별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범인 또는 개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방	
[전문개정 2023. 3. 14.] 제74조(양별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 · 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	
기구길 ㅜ ㅆㅡ의, 이글 글ㅜ길 ㅜ 바길!	
영구 골구 포는 구용는 다른 결약에 구 가하여 과할 수 있다.	

법제처 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영안 사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활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16조제3항·제22조제5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	
공을 거무한 사	
2. 제20조제1항 ·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그 제20조이2제1하으 이바침에 게이저 !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의 이용・제공 내역이나 이용・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24조제3항·제 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8조의	
3시는 3구를 포함한다) * 제23포기 4제1항 •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조용되는 경우를 포한하다)를 위반하여	
용되는 경수를 포함한다) • 제28조의 4제1항 •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자	
니안 자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용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용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용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정 및 비공개들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무단등록번호를 제3로만 지점 (제2로 전 제2로 전 제2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차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	
아어 무민등록민오들 저리안 자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통하지 아니한 자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 영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	
영한 자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 의 영상을 촬영한 자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에게 알려야 알 사항을 알리시 아니안 자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	
사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 거나 이를 회수 · 파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암한나)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 │	
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 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병가	
권외에 제품아시 아니안 사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얼[권[사] ()F[[OF AF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용되는 경우들 포암안나)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3. 제35도제36(제20도제66에 대기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 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 자	
수행한 자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1. 제35보의3세38을 뒤된던 시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1/3. 제3/소제3왕 또는 제3왕(제/0소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	
그구에 따드시 아니안 사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 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 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1 제26초제6하유 이바하여 이타되어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지 제20호세0왕을 되면하여 뒤럭시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 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전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다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재 2. 제31.7 제3합(제30.7 제3합(제 []]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로 하지 아니한 자	
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로 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 한 자	
	l .

한 자 6. 제27조제1항 ·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에 따라 순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 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순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9.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 한 자	
10.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 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싯으로 제줄한 자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 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시행일: 2024. 3. 15.] 제75조제2항제	
16호, 제75조제2항제20호, 제75조제 2항제21호, 제75조제2항제24호, 제	
제76조세4양세1호, 제75조세4양세9호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법제처 104 국가법령정보센터